

의안번호	2217692
의 퇴 인	이춘석의원
회 답 일	2026.4.7.
추 계 번호	26B1620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(충간소음의 방지 등)	충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충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음(제12항 신설) 1. 관리주체가 동일한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권고를 3회 이상 하였을 것 2. 충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을 것	재량규정
		제1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이 제5항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하게 하여야 함(제13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0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(충간소음의 방지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조치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
회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, 피해를 입은 입주자
등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
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지방공무원에게 층간
소음이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하
게 하는 내용임
- 이에 따라 층간소음 현장 측정이 이뤄지는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현
장 측정 수요와 인력 운영여건에 따라 기존 인력을 통해 처리하거나 추가
인력 및 장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, 현재 시·군·구별 개정안에 따른 요
건을 충족하여 현장측정을 신청하려는 건수와 인력 및 장비현황 등에 관한
정보가 불확정적이어서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
계가 있음
- 다만, 기후에너지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¹⁾의 층간소음
측정용역을 참고할 경우, 2인 1조로 구성된 층간소음 측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
비용은 인건비와 초기 장비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인건비 단가 예시

구 분	급여(A) (기준 단가 ¹ ×월)	인원 (B)	총액 (A×B)
초급기술자	60,067,862원 (5,005,655원×12개월)	1인	60,067,862원
초급숙련기술자	46,864,012원 (3,905,334원×12개월)	1인	46,864,011원

주 1. 급여산출근거(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(환경) 적용(2025.12.)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1) 기후에너지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분쟁에 대한 전화상담,
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([참고자료])

[표 2] 장비 구입비 단가 예시

구 분	산출내역	금 액(원)
소음측정기	5,416,665원(소음계 NL52 1set)	5,416,665원
합 계(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미적용)		5,416,665원

주: 장비산출근거는 기후에너지부 이웃사이센터 용역 발주 장비 기준
 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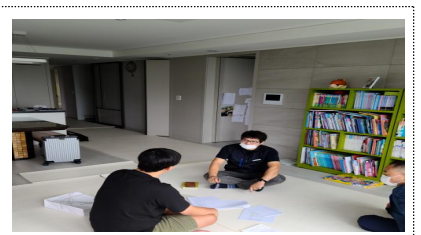
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

□ 추진 경과

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
 - * ‘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’ 제정(‘14.6월, 환경·국토부령)
- 「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’23.1.2)
 - *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·야간 기준 각각 4dB 강화
- 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’기관 일원화(환경공단·환경보전원→환경공단, ’24.1)

□ 추진 개요

-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
 - (내용) 분쟁에 대한 전화상담, 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 서비스로 갈등 완화 유도

		
온라인예약 시스템	비공동주택 확대 지원	전문 심리상담사 현장 상담

- (실적) ‘12년 개소 이후 전화상담 364천건, 현장진단 91천건 수행(’24년 기준)
-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 실시
 - (내용) 유아·초등학교*를 대상으로 이웃 간 지켜야 할 생활 예절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제공, 근본 문제 해결 유도

* 교육대상 : 만3세~만7세 유아 및 초등학교 1~2학년 어린이, 학부모, 교원 등

			
층간소음 예방 교육 홍보(초등 교육용 애니메이션 & 현장 캠페인)		층간소음 예방 홍보(예방 포스터)	

- (실적) '14년 시행 이후 196천명 교육 실시('24.12 기준)
- (결과) ① 유아·어린이 대상 교육 전/후 인지도 조사 결과, 교육 후 층간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인지도(점)가 32점 상승, ② 예방 교육을 받은 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, 평균 90점으로 높은 긍정 응답
-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홍보
 - 안내 중심 홍보에서 탈피하여 관리주체 갈등 조정 영상, 어린이 방송 및 유아교육 전 부스 등 쌍방향 홍보 강화
 - 층간소음 캐릭터(조용이·사뿐이) 제작 및 저감 물품 배포